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한 학교시설·설비기준의 변화

Changes in Education Building and Mechanical Standards for the Adoption of Open Education

김기남*

Kim, Ki-Nam

1. 기준의 종류 및 기능

1) 기준의 종류

학교시설·설비와 관련한 기준은 크게 나누어 국가 또는 학교의 설립 인가권자가 법규로 정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기준과 학교의 설립자가 학교설립시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법규로 정해지는 기준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대한 설립 인가권자는 학교급별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므로 인가권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국가수준의 학교설립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시설·설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도별 세부규정은 시·도에 따라 제정여부가 다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국가수

준의 규정(대통령령)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주요기능

국가수준의 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은 개인,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하여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여건을 유지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 학교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예측 가능토록 하여 학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

2. 기준의 문제점

기준은 법령의 속성상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정의 내용 또한 충분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을 적정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시·도교육청 등공공의 학교설립기관의 신설학교 예산편성시 학교급별, 지역별 또는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방식 등

* 정희원,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요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경직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준설정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이다.

3. 기준의 변천과정

1) 개요

학교시설·설비의 기준은 1969년 「학교시설·설비기준령」(대통령령) 제정 이후 1992년까지 14차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나, 1997년 법령의 체계 및 내용의 대폭적인 개편을 위하여 기존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폐지하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변천과정

- 제정 : '69. 12. 4
- 1차 개정 : '69. 12. 24
법령 한글화를 위한 정비
- 2차 개정 : '70. 11. 15
기준 미달학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 3차 개정 : '73. 9. 4
 - 체육장 기준면적 강화
 - 과학실 규정 신설
 - 강당, 체육관 및 수영장을 권장시설에 포함
 - 1학급당 급수전 2개 규정 신설
- 4차 개정 : '75. 10. 21
 - 유치원 관련조항 완화
 - 유원장 기준면적 완화
1학급당 300m² → 1학급당 300m², 추가되는 1학급당 100m² 가산
 - 유치원의 보통교실/유희실과 원장실/사무실 겸용 가능
- 5차 개정 : '76. 2. 12
시 및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의 기준 완화적용 가능 규정 신설

- 6차 개정 : '76. 6. 7
“각종학교”에 대한 시설규정 신설
- 7차 개정 : '79. 8. 25
 -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정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 관련조항 폐지
 - 보통교실 기준면적 66m² 이상 규정 신설
 - 주야간 수업학교의 조도기준을 50 룩스(Lux)에서 150룩스로 강화
- 8차 개정 : '80. 9. 26
 - 옥외 체육장 기준면적 완화
 - 국민학교 : 7,800m² 이상 → 5,000m² 이상
 - 중 학교 : 9,000m² 이상 → 6,000m² 이상
 - 고등학교 : 9,000m² 이상 → 7,000m² 이상
 - 유치원 : 유희실과 유원장 겸용 가능
- 9차 개정 : '81. 1. 27
유치원 유원장 최소기준면적을 200m²에서 150m²로 완화
- 10차 개정 : '82. 8. 5
 - 옥외 체육장 규정 완화
초·중·고의 옥외 체육장 기준면적의 30% 완화적용 가능
 - 유치원 시설기준 완화
 - 원장실/관리용 각실을 필수시설에서 권장시설로 변경
 - 보통교실의 기준면적을 66m²에서 50m²로 완화
- 11차 개정 : '84. 8. 2
 - 하위규정의 법령체계 완화
문교부령 → 문교부장관 고시
- 12차 개정 : '88. 9. 24
특수학교에 기숙사 설치 또는 통학버스 운영
- 13차 개정 : '91. 2. 1
내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토록 함
- 14차 개정

- 교지/체육장 면적 관련
 - 소요면적 산출방법 변경 : 학급당 → 학생당
 - 체육장 대각선 길이 130m 확보조항 폐지
- 과학실 강화
- 컴퓨터실 신설
- 권장시설에 교사용 회의실 및 교재연구실 포함
- 화장실 기준관련
 - 학생용/교직원용 분리
 - 학급당 → 학생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폐지
 - 기준령의 체계 및 내용 대폭 개편
 - 대폭 완화 및 위임
 - 다양화 유도 및 융통성 부여
 - 환경기준 강화

4. 열린교육을 위한 기준의 변화

1) 개요

종전의 규정은 학교급별 학급수에 따라 필요한 실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 있어 학급수가 동일하면 학교의 설립목적, 교수·학습방법, 운영방법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공간구성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칸막이로 구획되는 공간은 항상 변화할 수 있고, 특히 열린교육 등 다양한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코너학습, 팀 티칭, 복수의 학급 단위 또는 동학년 단위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칸막이로 구획되는 실의 종류와 수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다양한 수업전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설기준은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필요한 최소기준면적만을 제시하고 있다. 열린교육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교사기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종전의 기준은 학교에 필요한 교사시설을 필수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고 또다시 학교급별로 학급수에 따라 필요한 소요실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 또한 학급수와 동일한 수의 보통교실을 두도록 하고 보통교실의 크기를 66㎡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를 대폭 개선하였다.

새 기준은 학교급별로 학생 1인당 필요한 최소 기준면적만을 제시하고 실의 종류, 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학교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학교의 설립목적, 운영방법, 교수·학습방법 등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기준의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은 학교시설의 특성상 학생수가 아무리 적어도 학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면적을 갖춰야 하므로 학생수가 적으면 학생 1인당 소요면적이 많아지고 학생수가 많으면 1인당 소요면적이 적어지도록 하였다.

전체 소요면적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종전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으로 표현하였으며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은 [별표]와 같다.

5. 향후과제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토록 시설기준의 내용을 최소화 하여 걸림돌이 해소되었으나, 학교의 규모, 교수·학습방법 등을 고려한 학교유형별 공간구성비율을 분석·제시하여 학교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별표]

교사의 기준면적

(단위 : m²)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40명이하	41명이상	
유 치 원		5N	80 + 3N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7N	720+4N	1,680+3N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이하
인문계열	14N		960 + 6N	1,680 + 5N
실업계열			720 + 8N	2,160 + 6N
예·체능계열			480 + 10N	1,920 + 8N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총학생정원을 각각의 계열로 산정한 결과 소요면적이 많은 계열을 기준으로 한다.
3. 교육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총학생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